



할부금융 약정서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07.31

대한민국정부
인정지세
0.000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14년 15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귀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할부금융 약정과 체결에 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량내역	차종 /모델	판매 가격	원	선수금	원	추가 항목	원
------	--------	-------	---	-----	---	-------	---

매도인	판매사	판매 직원	금융담당 직원
		휴대폰 :	휴대폰 :

대출 및 상환 조건	할부원금(①)	원	이자율(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부이자(②)	원	유예금	원	할부기간	개월
	잔가보장약정	□잔가보장약정포함(잔가보장약정이 포함되었을 경우, "잔가보장에 관한 약정서"상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를 1%)x 잔존기간*/(대출기간-30) 으로합니다. *30일미만상환시'대출사용시간을'30 일로 간주합니다.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를 2%)x 잔존기간*/(대출기간-30 일)으로 합니다. *30일미만상환시'대출사용시간을'30 일로 간주합니다.				
		※무이자 상품일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는 위 수수료 규정과 상관없이 0%로 적용됩니다.				
	할부가격(①+②)	원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	지연배상금율 (“약정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 (24%)이내”)	연 %
	월 납입액(a+b)	원	월 할부금(a)	원	월부가 서비스료(b)	원
	보증조건	보증채무최고액	할부 원금의 130%	보증기간	할부기간과 동일	할부원금유예상환의 기간연장약정 채무자 겸 본인의 신청시 최종납부일의 유예할부원금에 대한 추가할부 이용가능 (세부내역 계약종료시 확정)
	담보내역	□자동차근저당 □부동산근저당 □예금 □유가증권 □기타()				

서비스상품	상품명 1	금액 1	
	상품명 2	금액 2	
	상품명 3	금액 3	
	본 서비스 상품의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은 쿠폰을 판매한 달리가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쿠폰북의 내용 중 "쿠폰사용방법" 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금융상품의 월납입액에는 본인의 과정에 따라 구매한 서비스상품의 월부가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 중도해지 등으로 사유로 본 계약이 만기 전 종료될 경우, 본인은 계약 기간의 종료일 현재 미납된 서비스 상품의 전체잔액을 남부하여 서비스 상품에 대한 권리와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총금액	(인)
		채무자 겸 본인	

연대보증인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자동차 구입 일 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회, 제 5 호에 해당					
	보증종류	특정근보증: 당해채무(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자택주소					전화번호		
직장(사업자)명		부서명	직위	재직(사업)기간			연소득/ 재산세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보증채무최고액		원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입니다.)			보증기간		개월
특이사항							

금융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종로 한강대로 416, 10 층 (남대문로 5 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프리츠 빌헬름 카바움		특약사항	(※공동채무계약의 경우, 분할비율 명기)
------	--	---	------	------------------------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판매직원		금융담당직원	
---------------------------	------	--	--------	--





할부금융 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07.3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 4 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 5 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 2 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제 1 항 이외에 제 6 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 9 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제 1 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8 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제 2 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제 10조 (항변권)

-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제 1 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 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채무자는 제 2 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인자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2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자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을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 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 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07.31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피아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개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입출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기금”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체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전자금융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자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체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제3자에게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과의 거래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화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자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13. “기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외국 또는 그 대가로 원화를 동시에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14. “구입”이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로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자체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와 같은 거래
2. 컴퓨터와 같은 거래
3. 전화기와 같은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 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송금내역 등 단조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와 같은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신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6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경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 규정에 따른 전자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경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 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별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 없는 경우

제 6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 7조 (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 8조 (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액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계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를 준용합니다.

제 9조 (수수익체의 출금 등의)

-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 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 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자체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상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거래의 제한)

-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전화(이메일)에 제기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 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장상,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금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터넷 유호기(인터넷케이블이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자체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 ① 전자지급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지급거래의 경우: 거래시점(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시점(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시점(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자체에 따라 자금거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거래자체의 철회 및 제한)

- ① 이용자는 제 11 조에 의하여 원로되어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자체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상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자체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원인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자체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파산·歇業·解禁·후경연수·피특정후경선고·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자체를 철회 또는 번역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3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형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4조 (사고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화재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설을 알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 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자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원인·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자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참가하여 거래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증으로 다른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 본인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 1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외합니다.)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관한 및 거래자체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용일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함한 행위 또는 도난·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5. 법령(“증券기입기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무를 다한 경우
 -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제 16 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 2 조 제 4 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볼니다.

제 17 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익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등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강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건강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재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여 제공 법령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3자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 19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리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0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볼니다.

제 20 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는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볼니다.

제 21 조 (거래내용 녹음)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비밀보장의무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권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24 조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을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25 조 (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볼니다.

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27 조 (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9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제 14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일인 할인여부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이율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으로 상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거로 합니다.
-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임금으로 등과 자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5 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제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거래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기라도록 지체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제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 13 조, 제 14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기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당순수를 말리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증정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의 번제 등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어음으로 삼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제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체무 전액을 알아기어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수를 말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번제 또는 상계의 채무가 수 개인으로서 채무전액이 번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방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번제 또는 상계의 채무가 수 개인으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의 상황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체무전액을 압류하여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로 번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릅니다. 경우에 금융회사는 채권보전에 지정한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분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증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잔단·할인여율의 결제기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번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번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범위내에서 채무자를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경망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체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6 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위험부담·연체조항)

- ① 채무자가 체무·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3 항에 따른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속도증의 사고 등 금융회사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견본·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감기로 하되, 채무자가 체무를 감기로 하거나 제 3 항에 따른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속도증의 사고로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감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 3 항과 같은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번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 등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증서 등의 인의·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톤링업하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 19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의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동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의하여 거래하거나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서면의 상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에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통지의 효력)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달라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 19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울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볼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체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벤달증명부 내용증명부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정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22 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력·업적·학력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로 하여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여,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적·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용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점검 상점·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상태 개선·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점검 상점·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 1 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금리의 경우경후 최초로 이를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11 조에 따른 기한전·임금회수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점검이 호전되었라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한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3 조의 2 (금리인하요구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신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점검 상점·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상태 개선·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점검 상점·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채무자는 대출금리의 경우로는 연체로 인해 여신한도를 낮았지만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신한도를 통해 여신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여신인하 요구로는 연체로 인해 여신한도를 낮았지만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신한도를 통해 여신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 ④ 채무자는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⑤ 금융회사는 제 1 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 24 조 (여행경조·준기법)

- ① 채무자의 여행경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여행경조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로, 이 약관에 따른 여행경조는 여전히 적용합니다.

제 25 조 (악관·부속악관·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악관이나 부속악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은 시행일 1 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 1. 법령 개정·제도 개선·악관·약관·경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악관을 변경한 경우
 - 2. 악관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악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 ② 제 1 항의 악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 1 항의 개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이전까지(제 1 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악관 변경 직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의 합의)

- ① 이 악관이나 디자인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로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율러 채무자와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율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